

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2021. 3.

농림축산식품부
(농 지 과)

1. 개정이유

농지원부는 농지 소유·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농지원부가 농업인(세대) 기준으로 작성되고 농업경영 입증자료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각 필지(지번)별 농지정보 관리에 취약하고 필지별 농지의 소유·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현황,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, 가공, 공개도 어려운 상황임. 이에 ‘모든 농지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필지별로 변경하여 공적장부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농업인(세대)·농업법인·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대상 변경(안 제70조 개정)
 -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등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별로 작성대상을 변경
 -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, 농지임대차 정보, 농업진흥지역 여부, 농지전용 사항,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0조(농지원부의 작성)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(農地原簿)는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며,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.

1. 농지 소재지
2. 지목, 면적, 용도지역
3. 농업진흥지역 여부
4. 등기원인, 원인일자 등 농지소유 현황
5. 임차인, 임대차계약기간, 임차료 등 농지임대차 정보
6.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
7.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부 및 조치상황
8. 농지전용 사항
9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지원부에 관한 적용례)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된 농지원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0조(농지원부의 작성)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(農地原簿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(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)·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.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-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학교·공공단체·농업생산자단체·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.	제70조(농지원부의 작성)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(農地原簿)는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며,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. 1. 농지 소재지 2. 지목, 면적, 용도지역 3. 농업진흥지역 여부 4. 등기원인, 원인일자 등 농지 소유 현황 5. 임차인, 임대차계약기간, 임대료 등 농지임대차 정보 6.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 7.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부 및 조치상황 8. 농지전용 사항 9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42